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. 1. 14 선고 2014가단853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1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원주시 C 전 111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32.05㎡ 지상 자동차관련시설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강윤희

별지